

# 퇴직공제

## 퇴직공제 과태료

**Q** 퇴직공제 신고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?  
공제회에서 전체 공사일보 기준으로 신고된 인원이 적다고 준공처리를 안해준다고 한다.  
자료 받을 수 있는 업체들 다 받아서 신고한 상태인데 과태료를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는  
방법이 있는지?

**A** 투입된 인원이 적어서 공제인원이 적다고 주장하시고, 과태료는  
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1차100 2차200 3차300  
건설근로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또는 자료를  
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차20 2차40 3차80  
건설근로자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,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 
15 2차30 3차 60입니다.

## 전자카드시스템도입과 원도급사의 책임

**Q** 하도급계약할 때 퇴직공제부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6월까지는 하도급인 우리가 신고를 했  
으나 그 현장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시스템 현장이어서 현장에서 7월부터는 출역  
내역을 정리했다.  
하지만 전자카드 및 지문으로 출석일수를 하다보니 누락 혹은 근로일수가 오류가 생겨 현  
장에다가 관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해 놓았지만 원청사에 출역내용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 
멋대로 납부를 하고선 퇴직공제부금비가 많이 나왔다면 우리 탓을 하는 상황이다.  
계약서상의 퇴직공제부금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근로자분이 이의제기를  
할 경우 우리 쪽에서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?

**A** 현장에 전자카드시스템이 도입되면 원도급사만 신고 가능하고 그에 따른 누락책임도 원도  
급사가 지게 됩니다.(현장에 전자카드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후부터는 하도급사업주 인정  
승인개념이 아닌 것이 됨)

## 퇴직공제 수령자격

**Q** | 우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다 10월1일자로 본사로 이전하여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, 10월1일자로 국민건강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상실신고를 하고 나면 바로 퇴직공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?

**A** | 건설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1년이상(근로일수 252일 이상)인 일용노동자가 자영업, 정규직 전환, 다른 업종 이직 등으로 건설업의 일용노동자로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는 때에는 퇴직공제금을 공제회 본부 또는 지부에 청구(방문, 우편)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퇴직공제신고주체

**Q** | 개인사업자이고 팀으로 움직여서 따로 신고한다고 우리가 신고하면 이중신고라고 하는데 퇴직공제를 업체에서 따로 신고할 수 있는지?

**A** | 퇴직공제는 원도급사업장이 신고주체입니다.  
보통 하도급사에서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고하지 않습니다.

퇴직공제는 원도급에서 하도급 인건비까지 모두 납부하는 것이 맞음  
(단,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엔 하도급사가 모두 납부함)  
원천적으로 재하도급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여부와 무관하게  
재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한 퇴직공제도 원도급사에서 모두 납부해야함

**Q** | 우리는 하도급업체이고 원청에서 A현장의 퇴직공제명단을 요구하는데 A현장에서 일한분들은 B,C의 현장으로 나누어 근로내역신고를 했다. 그래서 다른현장 명단을 원청에 보냈는데 이럴 때 생기는 문제가 많은지?

**A** | 다른 현장에서 근로했는데 A현장으로 퇴직공제 가입시 원청에서 납부할금액이 많아지니 싫어할 수 있습니다.  
근로내용확인신고는 타현장으로 신고하는 경우 산재발생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**Q** | 준공은 끝났고 하자보수로 인력왔을 때도 원청에 알려주어 퇴직공제 알려줘야하는지?

**A** | 준공이후에는 현장으로 퇴직공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.